

□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업무

- 환경교육 운영·기획·관리·강의 및 지원업무 등
 - 각 기관 총괄업무(각 시설 및 단체의 장), 환경교육 강의활동, 인사, 노무, 교육, 회계, 예산·계약, 홍보, 시설안내 등

□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 판단기준

- 보수교육 대상 업무와 비대상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임
(ex: 교육업무와 운전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)
- 정규직, 기간제근로자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환경교육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교육사는 보수교육 대상임
- 해당 기관의 통상근무시간 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보수교육 대상임

□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해당연도 판단기준

- 환경교육사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, 대상기관에 최초 채용된 경우 당해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거나 익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됨(선택가능)
 - ※ 2019년에 입사하여 2020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2023년, 2026년 등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함
- 보수교육 해당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퇴사 후 다른 보수교육 대상 기관에 입사하여 총 재직기간(퇴사기관 및 신규 입사기관의 근무기간 합산기간)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신규기관 입사 당해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
 - ※ 보수교육 해당연도란 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최초 대상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해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를 의미함

□ 보수교육 방법

-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으로 대체 가능
- 1일 교육시간은 7시간, 총 교육시간의 90%이상 출석하여야 이수 가능
- 보수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운영기관에서 이수증 발급

□ 보수교육 대상자 세부 판단 기준

- 보수교육 대상, 방법 및 교육시간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별표2에서 확인가능하며, 보수교육 대상자 세부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.

구 분	내 용
대상자	□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자 - 법 제18조제1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에서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직·간접적으로 담당하는 환경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○ 단,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어도 보수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교육사의 경우 보수교육 신청 가능 □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업무 ○ 환경교육 운영·기획·관리·강의 및 지원업무 등 - 각 기관 총괄업무(각 시설 및 단체의 장), 환경교육 강의활동, 인사, 노무, 교육, 회계, 예산·계약, 홍보, 시설안내 등 □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 판단기준 ○ 보수교육 대상 업무와 비대상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임 (ex: 교육업무와 운전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) ○ 정규직, 기간제근로자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환경교육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교육사는 보수교육 대상임 ○ 해당 기관의 통상근무시간 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보수교육 대상임 □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해당연도 판단기준 ○ 환경교육사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, 대상기관에 최초 채용된 경우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거나 익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됨(선택가능) ※ 2019년에 입사하여 2020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2023년, 2026년 등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함 ○ 보수교육 해당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퇴사 후 다른 보수교육 대상 기관에 입사하여 총 재직기간(퇴사기관 및 신규 입사기관의 근무기간 합산 기간)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신규기관 입사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※ 보수교육 해당연도란 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최초 대상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해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를 의미함